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 - 10
------	---------

제출년월일 : 2018. 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에 의한 정원을 정비하고, 구의회 사무국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17.12.31.)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1,413명에서 1,412명으로 조정(안 제2조, 별표 3)
 - 본청 일반직 5급 정원 1명 감(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 나.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조정 및 구의회 5급 정원 조정(안 별표 2, 3)
 - 별정직 직급별 비율 조정
 - 5급상당 이상 50% 이내, 6급상당 25% 이내, 7급상당 25% 이상
 - 구의회 별정직 5급 상당 1명 감 ⇒ 일반직 5급 1명 증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부터 제30조(정원의 규정)까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8. 1. 4. ~ 1. 10. (제출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구조문 대비표 1부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13명”을 “1,4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84명”을 “1,383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비율	(50)% 이내	(25)% 이내	(25)% 이상

별표 3 중 직급별 총 계란, 일반직 계란, 5급 계란, 별정직 계란, 5급 상당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412	1,412				
일반직 계		1,406	1,406				
5급		60	33	1	9	1	16
별정직 계		4	4				
5급 상당		2	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413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u>1,384명</u></p> <p>2. (생략)</p> <p>[별표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3. 별정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 style="width: 30%;">5급상당 이상</td> <td style="width: 30%;">6급상당</td> <td style="width: 30%;">7급상당</td> </tr> <tr> <td>비율</td> <td>(60)% 이내</td> <td>(생략)</td> <td>(40)% 이상</td> </tr> </table>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총 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청</th> <th style="text-align: center;">의회 사무국</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건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동</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413</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1,413</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6</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1,406</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 style="text-align: center;">34</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별정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급 상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able>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비율	(60)% 이내	(생략)	(40)% 이상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분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413	1,413					(생략)							일반직 계	1,406	1,406					(생략)							5급	60	34		9	1	16	(생략)							별정직 계	5	5					5급 상당	3	1	2				(생략)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1,412명</u> ----- -----</p> <p>1. ----- <u>1,383명</u></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3. 별정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 style="width: 30%;">5급상당 이상</td> <td style="width: 30%;">6급상당</td> <td style="width: 30%;">7급상당</td> </tr> <tr> <td>비율</td> <td>(50)% 이내</td> <td>(25)% 이내</td> <td>(25)% 이상</td> </tr> </table>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총 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청</th> <th style="text-align: center;">의회 사무국</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건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동</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412</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1,412</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6</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1,406</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 style="text-align: center;">33</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별정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급 상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able>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비율	(50)% 이내	(25)% 이내	(25)% 이상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분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412	1,412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406	1,406					(현행과 같음)							5급	60	33	1	9	1	16	(현행과 같음)							별정직 계	4	4					5급 상당	2	1	1				(현행과 같음)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비율	(60)% 이내	(생략)	(40)% 이상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분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413	1,413																																																																																																																																																											
(생략)																																																																																																																																																													
일반직 계	1,406	1,406																																																																																																																																																											
(생략)																																																																																																																																																													
5급	60	34		9	1	16																																																																																																																																																							
(생략)																																																																																																																																																													
별정직 계	5	5																																																																																																																																																											
5급 상당	3	1	2																																																																																																																																																										
(생략)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비율	(50)% 이내	(25)% 이내	(25)% 이상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분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412	1,412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406	1,406																																																																																																																																																											
(현행과 같음)																																																																																																																																																													
5급	60	33	1	9	1	16																																																																																																																																																							
(현행과 같음)																																																																																																																																																													
별정직 계	4	4																																																																																																																																																											
5급 상당	2	1	1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분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 별정 직급 상향 조정(7급→6급)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 경미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행정국 총무과 전보아
연락처	02-3153-8216